##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82

발의연월일: 2024. 9. 2.

발 의 자:이정문・이기헌・황명선

이학영 · 홍기원 · 임광현

문금주 · 김영배 · 조승래

윤건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HIV(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)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.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.

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 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6 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	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
의 의무) ① ~ ⑤ (생 략)	의 의무) ① ~ ⑤ (현행과 같
	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⑥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
	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
	한 사유 없이 감염인에 대하여
	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
	<u>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